

가정복지 실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확산 기초연구*

- 가정복지서비스 수혜 가정을 중심으로 -

Family Life Education for The Actualization Family Welfare

- Focus on Recipients of Family Welfare Service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 수 박 미 석**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MeeSok Park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t was quite an achievement to actualize family welfare, announcing 'Healthy Family Basic Acts(2004)', which enabled to pursue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including family life as a unit. This has enhanced family function, converting into consolidated family-centered service system, creating a new paradigm. The family life education must be spreaded and activated in the way of family welfare service,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le reducing social problems regarding to the boundary of family.

So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level of aspiration out from the family life education and the fact-revealing of training program within the family life. To examine these matters, 356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were sel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amily life education and the training program each other showed little relevance that merely 45% attended the program. Life planning program for Elderly was mostly asked in the research of the degree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Besides, many of them demanded for the family care program for those who have divorced, remarried or adopted the child, showing their active will to

* 본 연구는 200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특별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미석(msp@sookmyung.ac.kr)

solve them which have been dealt quite privately. Family life education is dealing with the current problem solving and future life planning. In this regard, it is strongly needed to experience and learn the dynamics of family life for lifetimes. Systemic family life education must be accomplished to solve, prevent and to cope with family problems.

Key Words :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가정복지(Family Welfare),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자(Recipients of Family Welfare Service)

I. 서론

2004년 우리나라는 가족단위의 가정생활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공포하여 가정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서 매몰되어 독립된 분야로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통합적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을 가족구성원인 개인으로 국한한 일시적이며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제는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정복지의 방향은 해당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가족원에게 접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가정생활을 단위로 하는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혜대상인 가정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장 및 생계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분양, 출산비 지원 등 직접적인 물적 자원 제공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활동지원, 가족원 보호서비스(탁아, 탁노 등), 가정봉사원제도 등 주로 인적·심리적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비경제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가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회적 지원의 형태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함이 자명한 이치이다. 우선 현 시점에서 준비된 사회적·학문적 인력으로 가정복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 대상이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인 가정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가정의 기능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복지가 외부체계의 지원에 의한 가정의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복지수혜 대상인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가정생활교육은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역기능적인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서 항상 제기되어왔던 사전대비 차원에서 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발달과 가정생활에 관한 고정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Laycock, 1967). 또

한 건강한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으로(Stinnet & DeFrain, 1985),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며 한 국가의 가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 역시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가족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선진국에서는 가정생활교육을 의무화하거나 가족위원회를 통해 지역마다 강화하고 있다(이경희·이소희, 1998 ; 서수경, 2001 ; 장혜경 외 2002 ; 정민자, 2004).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관련 전문단체에서 강력하게 가정생활교육 실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정생활교육이 학교 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양교육 차원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을 뿐, 대부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치의식이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상의 문제점들을 간과하거나 개별 가정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등 공적영역에 노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꺼려하는 현상도 우리나라의 가정생활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매년 복지예산을 확충하며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의 경향이 높다. 현 시점이 일 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및 복지서비스수혜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이 아닌 가정 및 가족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임을 감안할 때, 현재 가정생활교육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가정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과 특정 교육대상을 위한 세부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대상 당사자들이 전반적인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현재 그들이 교육받고자 하는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이 미비하였다. 그로 인하여 가정생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복지 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래의 가정복지 정책 및 관련 서비스는 결국 현존하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바, 그 안에서 수혜를 경험한 대상을 중심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정생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가정생활상의 어려움, 가정생활교육의 경험여부 및 만족도, 향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요구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기능강화, 가정문제예방, 가족해체 방지, 가족가치실현 등의 명시적 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생활교육의 활성화 기여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생활교육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있어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일정한 가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

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예들은 매 스킴을 통하여 연일 양산되는 역기능적인 사회현상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생활을 위한 지식·기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을 세대적 경험의 전수를 통해서 획득하고 그 가운데서 가정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생활과 사회문제와의 연결고리가 강하여 단순히 가정문제로만 인식하고 그 문제해결에 있어 가정차원에서의 소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가정생활에 대해 사회 정책적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즉,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가정이라는 삶의 기본토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단위가 개인을 넘어 발전된 가정을 단위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같이 가정을 단위로 하는 국가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정복지 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방향은 사후치료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가정 스스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교육이다. L'abate 등(1977)은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생활교육, 가정상담, 행동수정, 가족향상의 네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교육은 현재 또는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생활 및 상황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가정생활교육은 가정과 사회와의 역동성에 근거하여(Mace, 1979) 교육대상인 가족구성원들에게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활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Thomas와 Arcus(1992)는 가정생활교육은 가족구성원과 해당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생활교육은 전체로서의 가정과 생애주기에 따른 특수상황이나 갈등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들을 지원하고 동행하는 데 그 목표를 설정하여 가족구성원인 개인은 자립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게 한다(Familiennreport, 1994). 즉, 가정생활교육은 가정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치료적 접근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교육이 가정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임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정아 외, 1998). 첫째, 가정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개별 가정 스스로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정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이해는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둘째, 가정생활교육은 가정문제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 가정생활교육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문제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은 생활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성장 발달과정과 전환기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셋째, 가정생활교육은 사회와 관련된 가정문제

감소에 초점을 둔다. 가정과 관계된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는 교육적인 지원매개체로서 가정생활교육은 발전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게 하는 가정생활교육은 가정복지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넷째, 가정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가정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정이 지닌 강점을 개발하여 개인과 가정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정생활교육은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인 가족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교육내용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교육대상인 개인은 물론 해당 가정과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을 살펴볼 때 가정생활교육은 가정의 건강성 및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가정생활교육의 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사회교육의 한 방면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거나 이론적 틀에 근거한 가정생활교육은 아니었다. 그 이후 가정

생활교육에 대한 제도적이고 국가적인 관심은 1982년 사회교육법 제 2조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며, 가정생활교육이 사회교육 영역의 하나로 명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방안’ 등과 같은 포괄적인 주제를 내포한 대중강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생활교육의 본질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등과 같은 가족 내 역할수행 및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결혼 전 준비 교육, 중년기 가정, 노후생활설계 등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정생활교육, 맞벌이 가정, 실직 가정, 이혼가정 및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알코올 중독자 가정·가정폭력·치매노인 가정 등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특정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관계학회에서는 부부교육,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 치매노인을 위한 교육, 예비부부교육, 고부관계향상교육 등의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며, 이러한 가정생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4년

1) 19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공포된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에서는 사회교육을 정규학교 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정의하였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의 개념은 제2조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 1983년 9월 10일 공포)에서 가정생활 영역이 사회교육의 영역 10개(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 교육, 여가교육, 국제이해교육, 국민독서교육, 전통문화이해교육, 기타 학교교육) 중 하나로 명시되면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유영주 외, 1996).

<표 1>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현황

기관명	교육프로그램명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 '건강한 가정 뿌리내리기' 교육 :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향상, 시간관리와 생애설계, 식생활관리 - 이혼위기 부모교육
가정행복학교	- 결혼예비대학 - 부부대학 - 아버지대학 - 어머니대학 - 좋은부모대학
가족아카데미아	노년기 설계를 위한 생애교육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하이 패밀리)	- 결혼예비학교 - 부모학교 - 남편사랑교실 - 아버지학교 - 장애우 부모학교 - 고부학교 - 천국준비교실(노후생활설계교육)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국내입양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 행복한 선택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건강건설(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지회	노년기 여성 보호 및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 소비자 및 가정경제 교육
불교여성개발원	혼인준비교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빈곤여성가장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삼육대학교 부설 보건복지연구원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복지교육, - 주부를 위한 부부 의사소통 교육
서울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예비부부 교육 - 부부관계 향상 교육 - 부모역할 교육 - 재테크 관련 재무교육 -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서울지역사회교육문화협회	건강한 가정기초 만들기

가정복지 실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확산 기초연구

<표 1> (계속)

기관명	교육프로그램명
서울 YWCA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 : 여성노인의 노후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세세대육영화	- 부모교육 - 장애아동 부모 교육
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교육 - 이혼위기 부부교육프로그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 가정생활 관련 생활법률강좌 - 할머니할아버지학교 -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워크샵 - 결혼아카데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 노후생활 설계 교육 : '멋진 인생, 당당한 내 인생' - 행복한 부부되기 적용 워크샵 -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커플모임(혼인준비교실)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부부관계 프로그램 - 청소년자녀의 부모교육프로그램 -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 중년기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 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부모기 전이기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 부부대화법 - 노년기 준비교육프로그램 - 남성들을 위한 가족생활향상프로그램 - 중년기 위기예방 세미나
한국심리상담연구소	P.E.T(Parent Effective Trainging,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 실현으로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 청소년 건강가정만들기 교육
한국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가정생활교육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회 서울활동위원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평등가족 아카데미' : 건강한 가정을 위한 평등가족 아카데미
한국청소년상담원	부모교육
ME(Marriage Encounter) 서울협의회	부부관계 교육

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은 2004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거주하는 서울시에 국한하였다. 또한 1회성 애형강연은 제외하며, 정규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의 개소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었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가정생활교육의 현황을 실시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지금까지 가정생활교육은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및 기타 연구소 및 민간교육 기관,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이론, 지식, 기술, 상담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형태의 강좌가 이루어져 왔다. 지역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가정생활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과학대학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교내에 가정생활상담 및 교육기관 설치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업에서도 사원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강의 위주로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학자들을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도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 자료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건강가정지원센터³⁾에서도 주요사업으로서 가정생활교육이 이루어졌다.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가정기본법(제3장 제32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가정생활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도 점차로 국민들이 가정

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환경이 구축되어 교육대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정생활교육의 다양화와 운영 면에 있어서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실태와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을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정생활교육은 가정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는 문제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복지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의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관점에서 국가 및 민간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가정복지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실태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에 방문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를 구(區)로 층화한 후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7개구(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를 선정하고 다시 각 구별로 4개동을 선정하여, 총 28개동 해당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⁴⁾ 가

3) 보건복지부는 2004년 전국에서 세 곳(서울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여수시, 김해시)을 선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정부의

정 및 차상위 계층의 가정의 기혼여성을 소개 받아 면접조사하였다. 이들 통하여 수집된 조사대상 중 356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17일 ~ 3월 11일로 본 연구의 모든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 총 10명에 의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연구결과의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본 조사 대상자 중 무작위로 50명을 추출하여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 가계소득, 배우자 유무, 가구주,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에 대한 단일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정생활상의 어려움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가정생활교육 관련 항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정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만족도 및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고,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거나 의무화된 상태에서 가

정생활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연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가정생활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교육명을 기입하도록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였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가정생활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조사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선행연구(김인숙, 1992 ; 신화용·조병은, 1996 ; 최연실, 1996 ; 원효중, 1997 ; 이은해·이미리, 1996 ; 전춘애·박성연, 1996 ; 정현숙·서동인, 1996 ; 전태국, 1998 ; 최혜경, 1998 ; 변화순 외 2001 ; Turner, 1981 ; Belle, 1982 ; O'Bryant, 1988 ; Piotrkowski et al., 1987 ; Simons et al., 1993 ; Knox & Schacht, 1994)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가정생활상의 문제점으로 살펴보았다.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은 평생 발달적 접근, 가족 발달적 관점, 통합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할 수 있으나(송정아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의 즉각적인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NCFLE, 1968 ; Hennon & Arcusm 1993)는 운영원칙에 입각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생활교육은 관계의 개념이 중요하며(Kerckhoff, 1964) 가정생활교육에서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Deger, Harper & Whitehurst, 1962)라는 점에 근거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

보조금을 받는 계층을 지칭한다(보건복지부, 2004).

- 5)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미만인 자를 지칭한다(보건복지부 시행령 제36조).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2004)에 따르면 전 국민 중 잠재빈곤층은 1,099,565명(2.29%), 비수급 빈곤층은 2,486,808명(5.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58,962명(2.85%)이다. 한편 빈곤층을 가늠하는 통계로 자주 인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2001년 161만 가구에서 2002년 136만 가구로 줄었다가 2003년 156만가구로 늘었고 2004년 8월 말 현재 172만 가구로 급증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6)

구 분		명(%)	구 분		명(%)
연령	20-30대	136 (38.2)	배우자 유무	있음	231 (64.9)
	40-50대	172 (48.3)		없음	125 (35.1)
	60대 이상	48 (13.5)	가구주	여성 본인	138 (38.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77 (21.6)		그외 가족	218 (61.2)
	중졸	68 (19.2)	가구원 수	1명	24 (6.7)
	고졸	125 (35.3)		2명	77 (21.6)
	전문대졸 이상	84 (23.7)		3-4명	220 (61.8)
5명 이상				35 (9.9)	
취업 여부	전업주부	214 (60.3)	자녀 유무	있음	268 (75.3)
	취업주부	141 (39.7)		없음	88 (24.7)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함	31 (8.7)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69 (47.5)
	건강함	94 (26.4)		100-200만원 미만	86 (24.2)
	보통	86 (24.2)	200만원 이상	101 (28.4)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병이 잦아 일하기 불편함	111 (31.2) 34 (9.6)		주거 형태	자가 소유
종교	기독교	153 (43.0)	전세		91 (25.6)
	천주교	38 (10.7)	월세		41 (11.5)
	불교	62 (17.4)	임대아파트		156 (43.9)
	무교	96 (27.0)	친척집, 복지시설 등		12 (3.4)
	기타	7 (2.0)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중심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 가정자원관리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특수가정(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족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등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사항 및 생활실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2>과 같다. 연령은 20~30대가 약 38%, 40~50대가 약 48%, 60대 이상이 약 14%로 평균 연령은 44.8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약 41%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약 2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약 60%이며, 취업을 했더라도 (39.7%) 서비스·판매직, 기능·숙련직 등 임

금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약 35%이며,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약 39%로 나타났다. 남편(54.5%) 또는 자녀나 그 외 가족원(약 6.7%)이 가구주인 경우는 약 61% 이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3.2명이며,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약 7%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75% 이었고, 대부분(86%)이 1~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조사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매우 낮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월평균 가계소득은 1,251,949원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정이 약 48%, 100~200만원 미만이 약 24%, 200만원 이상이 약 28% 이었다. 주거형태는 자가 소유인 경우는 약 16%로 낮은 편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84%가 임대아파트,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59%가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하기 불편할 정도인 경우가 약 4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4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

려움(59.5%)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12.6%), 본인의 건강(11.1%), 직업의 불안정(6.9%), 가족의 건강(3.4%), 기타(3.5%)로는 주거불안, 가정불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가정생활 관련 교육 경험여부 및 교육만족도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 관련 교육의 경험 여부 및 교육만족도에 대한 일반사항은 <표 4>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정생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45%이며,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약 55%로 나타나, 가정복지 서비스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교육과의 접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가 현물이나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의 지원에 비해 해당 가정에게 있는 인적·심리적 서비스의 형태의 비경제적 자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각 가정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한 자원을 제대로 인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터득하고 활용할 때 효율적인 가정경영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 증대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표 3>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

(N=356)

문 항		빈 도(명)	백분율(%)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	156	59.5
	자녀양육 및 교육	33	12.6
	본인의 건강	29	11.1
	직업의 불안정	18	6.9
	가족의 건강	9	3.4
	가사일	4	1.5
	직장업무	4	1.5
	기타	9	3.5

<표 4> 가정생활 관련 교육 경험여부 및 교육만족도

(N=356)

			항 목	빈도(%)
가정생활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있다 (N=160)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18(11.5)
			종합사회복지관	44(28.0)
			각종 여성단체	3(1.9)
			문화센터	8(5.1)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5(3.2)
	여성인력개발센터		37(23.6)	
	여성발전센터		38(24.2)	
	기타		4(2.5)	
	교육만족도 (M = 3.52, SD = .93)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3(1.9)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22(13.8)	
보통이다		42(26.3)		
만족하지 못한 이유	대체로 만족한다	75(46.9)		
	매우 만족한다	18(11.3)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7(12.5)		
	강사의 자질 부족 때문에	5(8.9)		
없다 (N=195)	교육경험이 없는 이유	교육장소가 멀어서	11(19.6)	
		교육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23(41.1)	
		기타	10(17.9)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4(1.4)	
		교육비용이 비싸서	27(9.1)	
		집안일의 과다로 여유가 없어서	45(15.2)	
		교육시간이 부적절하여	6(2.0)	
자녀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24(8.1)			
취업으로 인하여 시간이 없어서	44(14.9)			
정보부족으로	18(6.1)			
관심이 없어서	15(5.1)			

때 교육의 형태를 통하여 가정경영에 관련한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28.0%), 여성발전센터(24.2%), 여성인력개발센터(23.6%), 주민자치센터(11.5%), 문화센터(5.1%), 대학부설 사회교육원(3.2%), 여성단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기관이나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의견도 약 3%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비용 부담이 적은 기관에서의 교육 참여를 나타내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

비용도 가정생활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표 5>), 가정정보화 교육, 가족원 관리, 식생활 관리, 의생활 관리, 주생활 관리에 관한 교육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노인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 내 여성은 자녀양육의 전담자로서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조사대

<표 5> 교육받은 가정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

(N=160)

	항 목	응답자수(복수응답)
1	가정 정보화 (인터넷, 전자가계부 작성 등 OA 관련 교육)	70
2	가족원 관리 (자녀 교육) (노인건강 및 와병노인 관리 등) (이·미용)	59 (30) (11) (18)
3	식생활 관리 (한식·양식조리) (제과·제빵)	41 (24) (17)
4	의생활 관리(양재·한복·홈패션·수예·자수 등)	25
5	주생활 관리(실내인테리어 등)	8
	Total	1203

상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여한 후 즉각적으로 교육내용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주로 참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받은 후 만족도는 평균 3.5점으로 조사 대상자 중 약 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약 1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41.1%)’, ‘교육장소가 멀어서(19.6%)’, ‘교육내용 부실(12.5%)’, ‘강사의 자질부족(8.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로는 ‘실생활에 활용되거나 창업이나 부업 등 취업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기간이 짧다’,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 미비하다’ 등이 지적되었다.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지적된 것은 ‘집안 일이 과다하여 여유가 없어서(15.2%)’, ‘취업으로 시간이 없어서(14.9%)’, ‘교육비용이 비싸서(9.1%)’, ‘자녀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8.1%)’, ‘정보부족(6.1%)’, ‘무관심(5.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4> 참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은 가정

생활 관련 교육을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사회에 기반 하며, 가정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근거리에 위치한 경우 더욱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심층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거리의 근접성에서 가장 유리한 기관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교육내용의 질에 대한 보장과 관리가 미비하여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마다 설치·운영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내 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대상자들의 영역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표 6>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

(5점 만점)

영역	평균	표준편차
부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4.01	.79
가정자원관리 교육 프로그램	3.85	.82
부모교육 프로그램	4.17	.74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4.28	.73
특수가정(한부모가정, 이혼/재혼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3.89	.8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4.12	.89
가족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	4.00	.84
전 체	4.07	.54

요구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와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4.07점으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28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4.17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4.12점),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4.01점) 가족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4.00점), 특수가정(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3.89점), 가정자원관리 교육프로그램(3.85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낸 결과는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무·유료 양로원 및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난 박미석 외(200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은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관리, 재정관리, 여가관리 등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음도 알 수 있다. 부모인 당사자는 물론 그들과 상호작용의 대상인 자녀에게도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한

결과는 그만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 권위로서 자녀를 대하며 자녀의 인성보다는 학업성공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자녀는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갈등을 성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등 적절치 못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제해결 및 예방차원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되고 있다. 배우자 학대·아동 학대·노부모 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을 단지 가족관계 갈등표출의 한 형태로 방관하는 것은 가족해체를 양산하는 또 다른 요인임을 가정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교육 요구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취업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의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생활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배경변인별 가정생활교육요구도

변인	구분	N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요구도																				
			부부관계 향상교육			가정자원관리 교육			부모교육			노후준비 교육			특수가정 (한부모가정, 이혼/재혼 가정 등)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가족여가 교육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연령	20-30대	136	4.00	.80		3.81	.79		4.22	.70	B	4.17	.73		4.21	.62		4.09	.88		4.14	.71	
	40-50대	172	3.99	.82		3.82	.88	B	4.25	.78	B	4.16	.80		4.26	.69		4.14	.92		3.91	.99	
	60대 이상	48	4.09	.69		4.06	.64	A	4.53	.62	A	4.23	.56		4.21	.58		4.17	.86		3.94	.98	
교육 수준	F		.28		1.87		3.42*		.19		.30		.20		2.89								
	중졸 이하	145	4.02	.77		3.89	.81		4.27	.75		4.11	.75		4.28	.65		4.13	.88		3.96	.80	
	고졸 전문대졸 이상	125 84	3.96 4.04	.85 .77		3.77 3.89	.88 .77		4.27 4.29	.79 .62		4.18 4.27	.78 .66		4.23 4.15	.65 .65		4.16 4.24	.96 .80		3.98 4.11	.88 .86	
가구주	F		.29		.95		.03		1.26		1.09		.95		.82								
	여성 본인	138	3.95	.83		3.81	.83		4.24	.83		4.18	.78		4.32	.62		4.05	.93		3.87	.92	
	그 외 가족	218	4.04	.77		3.87	.82		4.30	.67		4.17	.71		4.18	.67		4.17	.87		4.08	.78	
취업 여부	t		1.08		.73		.68		-.04		-2.06*		1.15		2.18*								
	전업주부	214	3.95	.78		3.87	.79		4.30	.72		4.15	.72		4.18	.65		4.13	.82		4.00	.83	
	취업주부	141	4.09	.80		3.81	.86		4.24	.76		4.21	.78		4.30	.66		4.10	.99		4.00	.87	
월평균 가계 소득	t		-1.60		.61		.75		-.77		-1.69		.32		-.05								
	100만원 미만	169	4.01	.79		3.83	.87		4.24	.83		4.18	.75		4.30	.62		4.11	.90		3.93	.93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86 101	4.08 3.93	.84 .76		3.91 3.83	.83 .73		4.28 4.33	.64 .62		4.16 4.17	.81 .67		4.20 4.15	.68 .67		4.21 4.07	.88 .89		4.17 3.97	.73 .75	
F		.85		.28		.46		.02		1.90		.56		2.28									

* p<.05 ** p<.01 *** p<.001 DMR : Duncan's MultipleRanges Test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교육 요구도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20-30대, 40-50대 여성들보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인의 전화에서 2000년과 2001년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2000년에는 시설�문의(20.3%), 가족관계(19.1%) 순이었으나, 2001년에는 가족관계(22.2%)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1996년까지는 가족관계 상담이 건강, 법률, 재가복지, 취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한국노인의 전화, 2002) 현대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 경로사상 약화, 부양의식 강화, 개인주의적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가정생활에 대한 개선책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교육 요구도에서는 여성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남편 및 기타 가족원이 가구주인 경우보다 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정에 대한 가정생활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간의 가정생활교육 요구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남편 및 기타 가족원이 가구주인 경우보다 가족여가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다($p < .05$). 대체적으로 여성가구주의 가정은 여성 본인이 생계활동 등 가정경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 내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이 사용되는 여가활동 참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스스로 노력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활동이므로 좀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자아확장에 도움이 된다. 즉, 가구주인 여성은 물론 가족원이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돈독한 가족관계

를 유지하여 가족 스스로의 체계 내 역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 부부관계 향상 교육, 가정자원관리 교육, 부모교육, 노후준비 교육, 특수가정(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정 등)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가족여가활동 교육 등에 관한 가정생활교육 요구 수준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 중 가정생활 관련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정생활교육과의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라고 하면 현물이나 현금 등 경제적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현실적인 고충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가정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인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가정생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근접성과 비용부담이 적은 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경험이 있는 가정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볼 때, 의·식·주 생활 관리와

같은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차원의 교육내용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사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한 후 즉각적으로 교육내용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주로 참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교육은 자기 계획적이고 자기 동기적인 자발성에 기초를 두며 과거의 학습경험과 생활경험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차갑부, 1995). 또한 학습참여에 있어 문제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을 위한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 같은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생활교육의 참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실행 후의 평가와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영역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수준을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교육은 현실의 생활상의 문제해결 방안과 미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러한 가정생활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 생애에 걸쳐 가정생활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정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의 재사회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많은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그 효과성을 볼 때,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대책으로서 후속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관한 관계 측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모임이 진행될 경우 동일집단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이혼·재혼·입양과 같은 특수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점은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가정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정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개별 가정 스스로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정 및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업의 한 영역으로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가정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재 지역의 가정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홍보를 통하여 지리적 근접성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근접성을 높여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가정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정생활교육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가정복지란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정생활교육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문제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은 생활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가족원이 서로 융화하고 돈독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 스스로의 체계 내 역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학교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양교육 영역에서 일부분만 다루어왔을 뿐이고, 다소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강연위주로 1회성의 해당 정보전달 차원의 가정생활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가정생활교육의 저변확대에는 기여했을지라도 교육대상인 가족원이 참여 학습, 실습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생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방향과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담당자들의 책임과 심사숙고가 요망되는 바이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더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므로, 가정생활교육의 전망은 희망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가정생활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다소 행정체계 확립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복지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정복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생활교육 영역에 있어 가정학 전공자들에 의해 개발된 우수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을 국민이 경험할 수 있는 쌍방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교육대상

인 개인 및 가정과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현재 가정복지서비스 수혜경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모든 가정에 까지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가정기능 강화, 가정문제 예방, 가족해체 방지, 가족가치 실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정생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1996), 행정기관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실태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6) 141-154.
- 2) 김경희(2003), 가족생활 만족을 위한 성인 평생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명숙(1995), 우리나라 가정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0.
- 4) 김승권·정민자·이승미·박세경·이종은(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73-184.
- 6)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7) 박미석·전지원·이유리(2003),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129-147.
- 8) 서수경(2001) 독일과 한국의 가족교육 비교

- 연구 : 사회정책적 차원, *한독교육학연구* 6(2), 43-67.
- 9) 송정아·전영자·김득성(1998), *가정생활교육론*, 서울: 교문사.
 - 10) 송혜림(2003), 가정복지사와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 가정복지 관련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145-164.
 - 11) _____(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12) 신화용·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 논집* 8, 57-76.
 - 13)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4.
 - 14)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15) 이정연·장진경·정혜정 역(1996), *가족생활교육의 기초*, 서울: 하우.
 - 16) 임정빈·김양희·이기영·홍형욱·계선자·이정숙·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63-180.
 - 17)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소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8) 정현숙(1998),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 가족향상프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55-68.
 - 19) 조재순·이경희·곽인숙·박정희(2001), 커뮤니티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동사무소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4), 121-134.
 - 20) 차갑부(1995),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 21) 한인선(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가족생활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23) *Familiennreport(1994), Bericht der Deutschen Nationalkommission fuer das Internationale Jahr der Familie, Bonn.*
 - 24) NCFR(<http://www.ncfr.com>)
 - 25) Mace, M.(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 a new filed?*, *The Family coordinator* Vol.28, 409-419.
 - 26) Thomas, J. & Arcus, M. E.(1992), *Family Life Eduaction : An analysis of the concept, Family Relation* 41(1), 3-8.